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다54060 판결 [건물명도등]

재판경과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다5406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31 선고 2004나24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 13 선고 2002가단509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피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31. 선고 2004나249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차인의 확정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 출연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D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832조에 의한 임차권의 귀속에 대하여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판결 등 참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부부의 일방이 그의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위 조문을 근거로 다른 일방이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상가사의 법률행위와 임차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